

# 졸업유예제 운영 규정

제정 2015. 1. 23.      개정 2015. 3. 3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5.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학칙」 제51조의2에 따라 대경대학교 소속 학생의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유예제”라 함은 「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졸업유예제”는 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유예기간)** 졸업유예제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예절차)** 졸업유예의 학생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은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학칙 제10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 ② 학칙 제51조(졸업)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신청시기)** ① 최초 신청은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에 한다.

②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한다.

**제8조(유예조건)** ①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②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③ 졸업유예자는 당해학기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학점당 3만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1., 2015.8.31., 2016.12.23.,

2017.5.23.>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제9조(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②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졸업유예 취소 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대경대학교 학칙」 제 75조(납입금의 반환) ②항을 준용한다.

④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전체평점평균(졸업유예 기간에 이수한 학점 포함)의 기준미달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

학부(과)			
학 번		성 명	
이수학기수		총취득학점	전체평점평균
e-mail주소		연락처	(TEL) (HP)
졸업유예 취소 사유	사망( ), 부상( ), 질병( ), 군입대( ), 기타( ) :		
졸업유예 신청 횟수	최초신청( ), 2회째 신청( )		
졸업유예 기간	학년도 학기		
위 본인은 대경대학교 졸업유예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졸업유예를 취소 신청합니다.			
<small>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졸업유예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학번, 전자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과정보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mall>			
20    년    월    일			
위 본 인			(인)
보 호 자			(인)
경		학 부(과)장	
유			
<b>대경대학교총장 귀하</b>			
- 첨부(관계 증명서류) · 국공립종합병원장진단서(6주 이상, 암, 법정전염병, 장기지속치료 중 택 1 이상) · 입영통지서사본, 군복무확인서, 사망진단서, 사유서 등			

※ 졸업유예 취소자 유의사항

1. 졸업유예 취소 사유 해당란( )에 ○표 표시할 것
2. 기타는 ( )에 ○표 표시 및 사유명시 하고 사유서 첨부할 것